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67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이수진・임미애・이기헌

김동아 · 최기상 · 민병덕

이건태 · 정준호 · 박홍배

윤종오 · 장철민 · 추미애

김태년 · 정성호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, 의료기관에 종 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.

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 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 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#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6제2항제1호 중 "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"을 "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	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		
절차 등) ① (생 략)	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			
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			
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			
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			
신고하여야 한다.			
1.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	1 <u>제</u> 3조제1항에 따른		
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	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		
인 및 의료기관의 장	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		
	<u>자</u>		
2. ~ 16. (생 략)	2. ~ 16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